|  |  |  |
| --- | --- | --- |
|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4호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제46호령으로 공표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이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세관의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3월 20일(당일 포함)부터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 및 <수입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형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 명의로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에 대하여 <수입설비 과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 증치세를 과세한다.  2.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실시 후 투자주관부서가 해당 목록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 코드는 'R'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산시(山西)성 제8항의 경우 '석탄층 가스 및 석탄 수반 자원의 종합개발•이용(R1408)'로 표시하고 프로젝트 성격은 여전히 'I : 외국인투자 중서부 우위산업•프로젝트'로 표시한다.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상기 관련 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한다.  3.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20일 전(당일 불포함)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비안(備案) 절차를 마친(프로젝트 허가일 또는 비안(備案) 완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도 이와 같음)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수속, 수입단계 증치세 과세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반드시 2018년 3월 31일까지(당일 포함) 투자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상기 문서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은 여전히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조목 및 코드에 따라 작성)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된 후 세관은 더 이상 수속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년 3월 20일 전(당일 불포함)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비안(備案) 절차를 마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의 범위에도 해당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투자주관부서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에 따라 발급한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감 감면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4.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한 후 해당 프로젝트 명의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세 혜택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수입설비에 대한 수입세가 이미 징수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7년 3월 17일 |  | **关于执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7年第14号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第46号令公布了《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并规定自2017年3月20日起施行。现就海关执行中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7年3月20日（含当日）起，对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范围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按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和海关总署公告2008年第103号及其他有关规定，除《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照章征收。  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实施后，投资主管部门按照该目录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外商投资企业设立（增资）批复或备案回执等相关文件中的“项目产业政策条目”编码为“R”。例如，山西省第8项应填写为：“煤层气和煤炭伴生资源综合开发利用（R1408）”，项目性质仍为“I：外资中西部优势产业、项目”；有关项目单位持上述相关文件及其他有关材料，按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相关手续。  三、为保持政策的连续性，对于2017年3月20日以前（不含当日）核准或备案（以项目核准或完成备案日期为准，下同）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3年修订）》范围的，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继续按照相关规定办理免征进口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手续。但有关项目单位须于2018年3月31日以前（含当日），持投资主管部门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外商投资企业设立（增资）批复或备案回执等相关文件（上述文件中“项目产业政策条目”仍按适用《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3年修订）》的条目及编码填写）及其他有关材料，按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备案手续。逾期，海关不再受理。  对于2017年3月20日以前（不含当日）核准或备案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同时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范围的，有关项目单位持投资主管部门按照《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企业设立（增资）批复或备案回执等相关文件及其他有关材料，按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备案手续的，海关可予受理。  四、对于不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3年修订）》范围的外商投资在建项目，凡属于《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范围的，在有关项目单位按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相关手续后，在建项目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参照本公告第一条的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但进口设备已经征税的，税款不予退还。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7年3月17日 |